

◎ 강원지방우정청 공고 제 2016 - 31호

우편업무취급세칙 제3조 및 우체국예금에 관한 사항 제5조에 의하여 강원지방우정청 2인 이하 근무우체국 점심시간 휴무제도 시행에 따른 창구업무 취급시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6년 5월 24일

강원지방우정청장

점심시간 휴무제도 시행에 따른 창구업무 취급시간

총괄국	국 명	창구업무 취급시간		점심휴무	시행일
		우편	금융		
춘천	강원신북	09:00~12:00 13:00~18:00	09:00~12:00 13:00~16:30	12:00~13:00 (1시간)	‘16.6.1.
평창	용 평	09:00~12:30 13:30~18:00	09:00~12:30 13:30~16:30	12:30~13:30 (1시간)	
태백	소도동 출장소	09:00~12:00 13:00~18:00	09:00~12:00 13:00~16:30	12:00~13:00 (1시간)	